

제1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1. 3. 23.(수) 15:1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형태근 위 원
양문석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 (2011-19-076)

- 박재문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과 분담금의 산정 및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동 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지상파 지역방송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을 방송광고 매출액의 3.37%에서 3.0%로, 라디오방송에 대한 징수율을 방송광고 매출액의 2.87%에서 2.5%로 인하하되,

·홈쇼핑방송에 대한 징수율은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2%에서 13%로 인상 조정

※ 위원회 보고('10. 12. 13)안건 대비 변경사항

- 분담금 징수권한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을 명시하고, 지상파방송 사업자에 대해 분기별로 징수한 분담금을 회계연도 종료 후에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함

2) 기간통신사업 허가에 관한 건 - 하나방송(주) 등 3개 사업자 - (2011-19-077)

- 최재유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거, 하나방송(주) 등 3개사의 기간통신사업(초고속인터넷)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선정기준을 충족한 하나방송(주)을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선정기준에 미달한 (주)한라네트워크, (주)청리케이블네트워크는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함.

3)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 인가에 관한 건 - (주)세종텔레콤 및 K-PEF의 (주)온세텔레콤 주식취득 - (2011-19-078)

- 최재유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의거, (주)세종텔레콤과 “코에프씨 큐씨피 아이비케이씨(KOFC QCP IBKC) 프린티어챔프 2010의 2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K-PEF’)”의 (주)온세텔레콤에 대한 주식취득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주)세종텔레콤과 K-PEF가 각각 온세텔레콤 주식 3,772만주(지분을 19.86%)와 3,700만주(19.48%)를 취득하는 것을 인가함

4) '11. 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2011-19-079)

- 오남석 전과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동통신, TRS(주파수공용통신) 등 9개 용도로 25개 사업자에게 할당된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11. 6월에 만료되고 '11. 3월말까지 재할당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마련된 「'11. 6월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기본계획(안)」,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고시 개정(안)」,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함.
- 재할당 기본계획 주요 내용
 - ① 재할당 대상주파수
 - (이동통신) 800MHz대역 SKT 30MHz폭, 1.8GHz대역 KT·LGU+ 각 20MHz폭
 - (기타) TRS, 무선호출, 무선데이터, 위성이동통신 등 8개 용도로 22개 사업자에게 할당된 주파수
 - ② 용도 및 기술방식
 - (이동통신) 용도는 이동통신용으로, 기술방식은 기존 기술방식을 포함한 3G 이상 국제표준방식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기술진화를 유도
 - (TRS 등 기타) 기술진화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
 - ③ 이용기간
 - (이동통신) '10.4월 할당한 이동통신 주파수와 같이 10년을 부여
 - (TRS 등 기타) '10.6월 위원회 의결에 따라 5년을 부여
 - ④ 할당방법
 - (이동통신) '06.6월 개정 전과법 규정에 따라 대가할당을 적용
 - (TRS 등 기타) '10.6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대가없이 심사할당을 적용
 - ⑤ 할당대가
 - 전과법시행령(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1.4%를 일시에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1.6%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
 -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SKT의 800MHz대역 30MHz폭 4,165억원, KT·LGU+의 1.8GHz대역 각 20MHz폭 1,944억원 등 총 8,053억원

⑥ 재할당 심사기준

- 전과법 규정(제11, 12조 및 고시)에 따라 전과자원 이용 효율성, 재정적 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심사하여 재할당 여부를 결정하되
- 주과수 이용실태, 국제적 표준 등을 고려하여 주과수 재배치, 일부 또는 전부 재할당

5)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 - (2011-19-080)

- 석제범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00조제1항을 위반한 씨제이이엔엠(주)에 대해 동법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원안대로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위반내용

- 씨제이이엔엠(주)는 자사가 운영하는 M.net채널을 통해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프로그램(‘10.12.20 14:00 ~ 15:00 방송분 등 총 17회)에서
- ‘나쁜 남자’들이 여자 출연자에게 “이런 애들은 노래방에 가면 2만 5천원 주면 밤새면서 놀 수 있어요”, 여자 출연자의 모형 패널을 부수고 발로 차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 ※ 기 제재조치(시청자에 대한 사과, 2010. 11. 9)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고, 유사한 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차 방송함.

② 처분내용

- 방송심의 제재 관련 법령 및 경감 사유를 반영하여 씨제이이엔엠(주)에 대해 방송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이 정한 과징금 금액 2,000만원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6) 「방송심의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관한 건 - (2011-19-081)

- 석제범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그 과징금 부과 처분 절차를 정하기 위해 마련된 동 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① 제재조치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 및 그 처분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대로 기속되어 과징금 처분

- ②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과징금 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

7) KBS-2TV '추적60분' 재심에 관한 건 - (2011-19-082)

- 석제범 방송진흥기획관의 보고를 받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방송법」 제100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한 '추적 60분' 프로그램 제재조치 처분('11. 1. 24)에 대한 한국방송공사의 재심 청구('11. 2. 11) 건에 대하여, 원심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처분대로 '경고'를 명하는 원안대로 의결함.

※ 원심 결정 내용 : KBS-2TV '추적60분'('10. 11. 17)에서 천안함 사건의 폭발원점·침전물질, 재조사 거부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제재조치 "경고" 의결

8) 춘천문화방송(주)의 재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 (2011-19-083)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보조국 구축에 관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춘천문화방송(주)에 대해 방송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원안대로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재허가 조건 위반사항

- 춘천문화방송(주)은 '10. 12월 말까지 구축하여야 하는 5개 방송보조국을 모두 미 구축하여 '09년 재허가조건을 위반함

② 시정명령 내용

- '11년 상반기 구축 예정인 3개 방송보조국(태기산, 초록봉, 대암산)은 빠른 시일 내에 구축 완료하고, 나머지 2개 방송보조국(양양, 호산)에 대해서는 별도 구축 장소를 선정한 후 '11. 4월말까지 허가 신청하고, '11. 6월말까지 준공 완료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할 것

사. 보고사항

1) 모바일 정보기기 한글자판 국가표준 채택에 관한 사항

- 모바일 정보기기 한글자판(4×3 배열)에 대한 방송통신국가표준 채택 방안을 박재문 융합정책관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 내용

① 방송통신 국가표준화 추진 방안

- 일반 휴대폰에 대해서는 천지인 단일표준을,
-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천지인, 나랏글, SKY 복수표준을 채택 추진
- 다만, 민간포럼에서 제안하는 신기술 방식을 국가표준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 ('12년 상반기)

② 향후 추진일정

- 전파연구소의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거쳐 국가표준 제정 : '11. 6월
- ※ 인터넷전화기 등으로의 적용범위 확대 검토 및 중국 등과의 국제협력 추진
- 한글자판 국제표준화(ITU 등) 추진 : '11. 6월

2) 지상파DMB사업자의 방송보조국 구축에 관한 사항 - 안동MBC 등 6개 지역 지상파 DMB사업자

- '10년도 재허가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재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안동MBC 등 6개 지역 지상파DMB사업자가 제출한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 내용

- 방송보조국 구축계획

- 최초 허가시 제출한 구축 계획 중 이행하지 아니한 31개와 추가 6개 등 총 37개 (출력 1~2kW 12개, 100W이하 25개)의 방송보조국을 구축

사업자	'11. 12월까지	'12. 6월까지	'12. 12월까지	'13. 12월까지	합 계
안동MBC	(3개국)	(1개국)	(2개국)	1개국 (2개국)	1개국 (8개국)
KNN	1개국 (2개국)	1개국 (2개국)	(1개국)	(1개국)	2개국 (6개국)
대구방송	1개국 (3개국)	1개국 (1개국)	(2개국)	1개국	3개국 (6개국)
광주방송	2개국	1개국	(2개국)		3개국 (2개국)
강원민방	2개국		1개국	(2개국)	3개국 (2개국)
제주방송	(1개국)				(1개국)
합 계	6개국 (9개국)	3개국 (4개국)	1개국 (7개국)	2개국 (5개국)	12개국 (25개국)

※ ()는 출력 100W 이하 방송국, 그 외는 출력 1~2kW 방송국

3)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방송프로그램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방송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찬고지, 외주 제작 인정기준 등을 개선하고,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 부터 보고 받음.

○ 주요 내용

① 편성비율 및 협찬고지 관련

①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산정기간 확대(제57조제1항)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 단위에서 '매반기'로 확대

②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합의조항 폐지(제57조제5항, 제58조제4항)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제작 및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고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합의조항 폐지

③ 편성비율 산정기준에 관한 하위법령 위임 근거 마련(제57조제7항)

- '국내제작 영화의 주시청시간대 편성시 가산시간 인정'과 같은 산정기준의 하위 법령 위임 근거 마련

④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에 관한 하위법령 위임근거 마련(제58조제5항)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에 관하여 고시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⑤ 공익적 목적의 자막 안내·고지 허용(제59조제2항제1호라목)

- 자막광고로 분류하지 않는 항목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의 안내 또는 고지'를 추가

※ 공익적 목적의 자막고지 : 재난정보, 긴급 수혈, 선거안내, 질병예방 등

⑥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제60조제1항제3호·제3호의2)

-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을 원칙적 허용

· 외주제작사 보호 등을 위해 서울 권역의 지상파방송사업자 KBS, MBC, SBS의 TV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한정

② 기타

- ①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에 대한 자구 수정(제15조의2제5항)
- ②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에 대한 자구 수정(제21조제1항)
- ③ 보훈법령 개정으로 명칭변경 및 법률조항 정정(제44조제1항)
 - 수신료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법령상의 면제대상자 법률조항 정정 및 개정 법률명 반영
- ④ 채널 임대 제한 MPP의 범위 명확화(제53조제2항제2호라목)
 -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범위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됨을 명시
- ⑤ 소속기관 업무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제68조제1항)
 - 전송망사업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소속기관의 장(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
- ⑥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대한 자구 수정(별표 1 - 제17조관련)

4)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선정('10. 12. 31)된 (주)씨에스티브이, (주)연합뉴스TV, (주)제이티비씨가 승인장 교부를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중간 검토결과 및 향후 계획을 김준상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

○ 주요 내용

① 검토계획

① 승인장 교부 관련 검토 사항

-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
- 주요주주 변경 여부 및 기타주주 변경에 따른 신청법인의 자격 여부
- 승인조건 부과 내용

② 중간 검토결과

- 3개 승인장 교부 신청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3개 신청법인 모두 계획했던 자본금 납입 및 회사 설립을 완료
- 자격 여부를 검증한 결과, 주요주주의 구성(지분을 포함)이 변경된 신청법인은 없으며, 기타주주 변경 과정에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및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신청법인은 없음

※ 제출 서류의 적정성 및 자격 여부 검토의 경우, 검토의 일관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승인 심사위원회 법률 분야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

③ 향후 검토계획

- 제출 서류의 적정성 추가 검토 및 보완(필요시)
- 신청법인의 자격 여부에 대한 추가 검증
- 승인조건에 대한 검토 등

② 향후일정

- ① (주)씨에스티브이, (주)연합뉴스TV, (주)제이티비씨 승인 의결 : '11. 3. 30
- ② 승인 의결 직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일시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

6. 폐 회 (16:45)